성주군 4세대 이상 효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
검 토 보 고

1. 발 의 자 : 도정태 의원 외 3인

2. 제정이유

아름다운 전통문화 유산인 효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자녀들의 효 의식 고취를 위하여 4세대 이상이 함께 사는 가정에 효도수당을 지급함으로써 효행을 통한 건전한 가족제도 정착과 효 문화 확산을 도모코자 함.

3. 주요내용

○ 본 조례의 구성은 제1조 목적에서부터 제9조로 구성되어 있으며
- 조례에서 사용하는 목적과 용어를 정의함. (안1조～제2조)

○ 효도수당의 지급대상, 지급기준, 지급신청 및 방법, 지급시기, 지급중지 및 환수조치에 대하여 규정함(안 제3조～안 제7조)
- 4세대(世代) 이상 효 가정으로 성주군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함께 거주하여함.
- 효도수당은 세대별 월 100,000원으로 하며, 지급일은 매월 말일로 함.
- 직계존속, 직계비속,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사망 또는 주소변경 등으로 4세대 구성 요건이 변동 된 때와 효도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한 때, 그 밖의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였을 때는 지급을 중지함.
-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효도 수당을 지급 받은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수당 전액을 환수함.

○ 효도가정의 사기진작과 효 문화 확산을 위해 “효도 가정의 집” 표식을 제작·설치하는데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함.
(안 제8조)

※ 참고사항

가. 예산조치 : 관련 부서와 합의 예산반영

나. 조례안예고 : 2012. 5. 7 ~ 5. 16(의견 있음)

의견제출자	제 출 의 견	조 치 여 부	비고
성주읍 성산리 이병현	□ 지급기준 상향 ○ 경로효친 사상이 퇴색되어 가는 현실에서 4세대가 함께 하기 어려운 현실에서 아름다운 전통문화 유산인 효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더욱 고조시키기 위해서는 지급기준을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상향 조정.	**반영(√) 미반영()** ○ 경로효친 사상을 더욱 고조시키자는 의견이므로 10만원으로 상향 조정함.	

4. 관련법령 : 「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제11조

5. 검토의견

□ 제출자, 제정이유, 주요내용, 관계법령은 보고서로 가름 하겠습니다.

○ 본 제정 조례안은 아름다운 전통문화 유산인 효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자녀들의 효 의식 고취를 위하여 4세대 이상이 함께 사는 가정에 효도수당을 지급함으로써 효행을 통한 건전한 가족 제도정착과 효 문화 확산을 도모하기 위한 제정 조례로서

○ 효도 수당의 지급대상, 지급기준, 지급신청 및 방법, 환수조치와 4세대 이상 효 가정으로 성주군에 1년 이상 함께 거주시 세대별 월 10만원을 지급하는 조례안으로 자치입법 입안심사 기준에 합당함으로 본 조례안을 제정함이 타당 하다고 사료 됩니다.

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.